

의안번호	제 33 호
의결년월일	1998. . .

의결사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년월일	1998. 8. 21 .

사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
----------	----

제출일자 : '98. 8. 7.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 IMF 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소값하락으로 농어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임대주택 및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시세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호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

나.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한다

3.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9조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998. 7.30 ~ 8.18.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신문광고

다. 접수된의견 : 없음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60제곱미터”을 “85제곱미터”으로 한다

“제25조 내지 제28조”를 “제26조 내지 제29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5조의 개정조례는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2호의 개정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제12조제2호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1.(생략)		1.(현행과 같음)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2. - - - - 85제곱미터 - - - - -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 - - -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 - - - -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 - - - -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		- - - - -		
의 50을 경감한다.		- - - - -		
3.(생략)		3.(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25조(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u>		
		<u>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u>		
		<u>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u>		
		<u>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u>		
		<u>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u>		
		<u>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u>		
		<u>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u>		
		<u>추징한다.</u>		
<u>제25조 내지 제28조(생략)</u>		<u>제26조 내지 제29조(현행과 같음)</u>		